

(붙임 3)

## 연송치의학상 규정

제정 2004.12.21  
개정 2006. 1. 9  
2008. 9.11  
2010.12.17  
2011. 3.18  
2012.11.21  
2013. 7. 4  
2017.11.28  
2018. 9.12  
2022. 3.25  
2023. 2.24  
2023.12. 8  
2024. 3. 8  
2024.12.13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가 제정하고 (주)신흥이 후원하는 연송치의학상의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상의명칭)** 본 상의 명칭은 “연송(蓮松)치의학상“ 이라 칭한다.

**제3조(수상부문)** 연송치의학상은 대상, 연송상, 치의학상 부문으로 구분한다. (개정 2022. 3.25)

**제4조(수상인원)** 수상자는 대상, 연송상, 치의학상 각 1명으로 한다. (개정 2022. 3.25)

**제5조(수상대상 및 자격)** 수상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(이하 ‘협회’)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 중 대한민국의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인 자 중 추천 공고 직전 최근 2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지 또는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의 논문이 게재된 자로 선정한다.(개정 2024.12.13.)  
(시행일 2025. 2. 1.)

**제6조(심사 방법)** ① 수상후보자는 공고 직전 최근 3년동안 SCIE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발표업적(편수)이 현저한 자로 선정하며, 접수당시

‘Online ahead of print’ 또는 ‘게재예정’ 인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. (개정 2022. 3.25, 2023. 2.24)

- ② 후보자가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공동참여저자인 경우와,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 (개정 2022. 3.25)
- ③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 중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의심학술지로 간주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 (개정 2022. 3.25)(개정 2023.12. 8.)
- ④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1위를 대상 수상자로 하고, 대상을 제외한 기초부문 1위와 임상부문 1위를 각각 연송상과 치의학상의 수상자로 한다. (개정 2022. 3.25, 2024. 3. 8)
- ⑤ 점수는 SCIE 국제학술지 논문 1편당 1점으로 하여 합산하되, 특정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저자 숫자로 나눈 값을 부여한다. (개정 2022. 3.25)
- ⑥ 제5항과 같은 방식으로 부여한 총 평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Impact Factor 계산방식에 의한 IF점수로 순위를 정한다. (개정 2022. 3.25)

$$IF\text{점수} = \sum_{i=1}^n (IF_n \times 1/A_n)$$

IF<sub>n</sub> : n번째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심사시점 기준 최근 발표된 Impact factor

A<sub>n</sub> : n번째 논문에서 후보자가 제1저자일 때의 공동 제1저자 수  
또는 후보자가 교신저자일 때의 공동 교신저자 수

- ⑦ 대상 수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하고, 연송상 및 치의학상 수상자는 7년 이후에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3.25)
- ⑧ 기타 수상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 2022. 3.25)

**제7조(수상후보자 추천)** 수상후보자는 소속 기관장 또는 분과학회장의 추천서와 해당논문(저자, 제목, 게재지, 쪽수, 연도)의 목록 및 논문 파일을 제출한다. (개정 2018. 9.12)

**제8조 (추천서 접수)** 매년 12월 중 공고하여 2개월 내로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.

**제9조 (심사위원회 구성)** ① 심사위원회는 치의학회 부회장 2인(위원장 포함)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수련고시이사, (주)신흥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.  
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치의학회 임원의 임기로 한다.

**제10조 (수상자 결정)**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치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치의학회 총회에 보고 및 협회 이사회에 통보한다.

**제11조 (상의 수여)**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.

**제12조 (시상일 및 장소)** 시상은 매년 치의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**제13조 (심사료 지급)** 심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**제14조 (준용내규)**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와 (주)신흥이 공동으로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.  
(개정 2022. 3.25)
2.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 제5조의 단서조건에 “추천 공고 직전 최근 2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지 또는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의 논문이 게재된 자”에 대해서는 2025. 2. 1.부터 적용한다. (개정 2024.12.13.)